



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,
대치동 27-1(대치동)
코원에너지서비스(주) 귀하
06332

기타잡수입(그외수입)[부과고지서]

서울특별시 코원에너지서비스(주) [부과일자: 2020년 02월 18일]

납부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, 대치동 27-1(대치동) [0 6 3 3 2]
주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구간내 도시가스 이설공사비 환수
부과대상

0010044 10228999 2020022 인터넷 0000191

납부번호	기관번호	납부금액	세목	납부년월기	부과번호	납부기한	합계액
		13,882,000		2020.03.04			원
				까지			
		13,882,000					원
				까지			

합계액 13,882,000 원
2020.02.18
위의 금액을 납부하지기 바랍니다.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 11001-2-20-20-802172581

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

년 월 일

수납인

이상욱A 02-3708-8661
(발급부서: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)

납부장소: 전국은행(한국은행계)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시협 수협 신용조합
기타잡수입(그외수입)[부과고지서]

서울특별시 OCR 0010044 10228999 2020022 기관보관용 0000191

납부번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구간내 도시가스 이설공사비 환수
부과대상

110010044102289992020022000019100013882000000000000001

000138820020200304741+

코원에너지서비스(주) 상시수납가능

납부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, 대치동 27-1(대치동) [0 6 3 3 2]

주소 납부금액 13,882,000 납부기한 13,882,000 원

금 액 13,882,000 원

금 액 13,882,000 원

합계액 13,882,000 원

발급일자 2020.02.18
발급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
수납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
담당자 이상욱A 02-3708-866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월 일 수납인

전자납부번호 -802172581

귀하

부과내역

산출근거: 도목부-3293(2020.2.17) 이상욱A

납부 전용계좌

우리은행	102-454681-65-208
신한은행	562-051-76517248
KEB하나은행	122-824168-60537
국민은행	4130-92-0136560-6
기업은행	601-201361-97-996
우체국	911136-80-016171
씨티은행	434-68570-92-8-04
농협은행	790-0760-8500-865
수협은행	085-40-101836523
카카오뱅크	9102-05-9660629
케이뱅크	700-0205-966-0602

기타잡수입(그외수입)[부과고지서]

서울특별시 코원에너지서비스(주)

납부번호 0010044 10228999

납부번호 2020022 0000191

11001-2-20-20-802172581

전자납부번호 2020.03.04

13,882,000 원

금 액 13,882,000 원

까지 원

도시기반시설본부장

수납인

>> 과태료 안내

과태료 납부 및 체납에 대한 안내

- ① 자진납부고지서는 부과될 과태료의 **20% 범위 이내의 금액이 감경**된 것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진납부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으며, 당초 부과 예정 금액(감경 전 금액)이 표기된 부과고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② 2008.6.22부터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5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7%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③ 부과된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④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,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,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(감치 1,000만원)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, 관허사업 제한,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과태료 구제방법

- 이의제기 :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제기의 처리 :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>> 세외수입 안내

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안내

- ①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금이 적용되는 세목은 납부기한 경과시 3%의 가산금이 가산되며, 납기내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5%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②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세외수입을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(부동산, 차량, 동산, 예금, 보험금, 급여, 유가증권, 매출채권 등)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세외수입 구제방법

- 세외수입 부과·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
-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제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전자납부 안내

인터넷(etax.seoul.go.kr, www.w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며, **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**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.

전용계좌납부 안내

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**전용계좌**로 인터넷 뱅킹, 텔레뱅킹,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.(단, **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**하셔야 합니다.)

현금인출기(CD/ATM기)납부 안내

전국 은행에 설치된 **현금인출기(CD/ATM기)**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.(단, 타행(사) 신용카드에 따른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)

ARS납부 안내

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.

- ARS 납부 : 1599-3900
- ARS 상담 : 3151-3900

스마트폰납부 안내

「서울시 세금납부, 앱(APP)을 Play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실행하여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.

편의점납부 안내

편의점(CU, GS25, 세븐일레븐, 바이더웨이, 미니ストップ)에서 신용카드(삼성, 현대, 우리비씨, 롯데, 외환) 및 은행 현금카드로 24시간(토·일요일 포함) 납부 가능합니다.
※ 우리, 신한 이외의 현금카드 이용시 이체수수료 발생합니다.(납부자 부담)



서울시에 궁금한 사항은
국번없이 ☎120으로!